

★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합시다.

【국민건강보험(국보)이란?】

일본에서는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국보)은 직장의 건강보험(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 등) · 후기 고령자의료제도 가입자와 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국보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이 운영합니다. 질병, 부상에 대비해 가입자 모두가 함께 돈을 모아,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의 의료비 보조 등에 충당하는 상부상조에 기반을 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국보를 지탱해 갑시다.

【국민건강보험료(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료(보험료)를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이라고 말합니다. 체납 시에는 독촉장이 송달되거나 연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특별요양비 지급 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여러분의 의료비에 충당되는 국보의 귀중한 재원입니다. 질병, 부상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합시다.

● 독촉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송달됩니다. 독촉 수수료 ·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특별요양비 지급

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 일단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특별요양비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급부 유지(留止)

국보 급부가 전부 또는 일부 유지(留止)됩니다.

※ 이밖에도, 근무처나 은행계좌 등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압류 등 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 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 재해, 질병, 도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거나, 병원에 치료를 다니거나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의 경우 감면 · 분할 납부 · 특별요양비 지급 조치의 해제 등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조속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시모노세키시청 보험연금과 징수계

전화 (083) 231-1689